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62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 강유정 · 김영배 · 박희승

임미애 · 문정복 · 민병덕

박 정・김준혁・강경숙

위성락 • 권칠승 • 김한규

정을호 • 백승아 • 한창민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취약한 정보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인 거리 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 도서관으로의 직접적인 이동이 어려워 장애인이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 등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일부 온라인서비스의 경우 장애인을 대리해 보호자 등이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자료가 다운로드되지 않아 결국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한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

기 위해 설립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이유와도 배치된다.

이에 보호자 등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 성을 강화하고자 한다(안 제24조제2항제4호). 법률 제 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장애인"을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②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서관자료에 대한 <u>장애인</u> 의	4 <u>장애인</u>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및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		
	<u>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u>		
	는 자(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		
	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